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 제7판 -

2022. 12. 21.

환경부

◆ 코로나19 상황 및 방역체계 변화*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 처리 기준 등을 변경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7판」을 마련함

* 감염병 등급 완화(1급→2급, '22.4.25), 전년 대비 격리의료폐기물 배출량 감소 등

-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 변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및 제31조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 보관, 수집·운반 및 처리

목 차

①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방안	1
②	시설별 코로나19 폐기물 안전처리 방안	3
③	확진자 방문지 및 다중이용시설 폐기물	9
④	폐기물 종사자 지원 및 사고예방	9
⑤	행정지원 대책	10
붙	임	12

1]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방안(23.1.1 시행)

-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의료폐기물 분류 및 처리
- 다만, 배출자 분류, 코로나19 격리태그 사용, 소독 강화 등 유지

【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 변경 】

	(현행)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6판)	(변경) 폐기물관리법
분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분류 강화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타 감염병과 동일 기준 적용 ※ 격리환자 잔반은 소독 후 생활 폐기물로 처리 등
배출자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위탁처리 (1~2일 이내 보관) ○ 전용용기 투입전·후 소독 ○ 냉장보관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일까지 보관가능 ○ 합성수지 전용용기 사용 * 전용용기 밀폐전 용기 내부, 외부 반출전 용기 외부 약물소독 ○ 전용 보관창고 (조직물류 형태는 냉장보관)
운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보관 금지, 당일 운반²⁾ ○ 사용시 마다 차량 약물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장운반 ○ 임시보관(2일)
처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소각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기한 2일 ○ 전용보관 창고

1)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의 통계관리 등을 위해 **코로나19 임시코드는 유지**

2) 당일운반 관련 수집·운반업체 비용지원 종료

현행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자 구분) 소방서, 생활치료센터 등 임시배출자 권한 유지 ○ (폐기물 분류) 자가진단키트(RAT), PCR, 보호장비 등 코로나19 진단 시 사용된 폐기물은 일반의료폐기물로 소독 후 처리 ※ 다만, 코로나19 양성·음성환자가 명확히 구분된다면 음성환자 진료에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생활폐기물에 준하여 처리 가능 ○ (기타) 코로나19 의료폐기물 보관 시 매일 1회 이상 소독
--------------	--

가. 발생 및 보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5호 준수

- (배출)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 행위가 끝났을 때)부터 전용용기 투입(시설내 이동 최소화) 후 밀폐

격리의료폐기물을 넣은 전용용기는 용기를 밀폐하기 전에 용기 내부, 처리하기 위해 보관시설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용기의 외부를 각각 **약물 소독** 단, **폐기물태그**는 **코로나 격리의료폐기물, 격리의료폐기물 구분**하여 부착

※ 의료진 등이 사용한 **개인보호장비(마스크,보호복)**와 같이 **전용봉투가 찢어지거나 외부로 누출될 우려가 없는 격리의료폐기물**은 합성수지 전용용기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합성수지 전용용기 대신 골판지 전용용기를 사용할 수 있음

- (보관) 배출자는 폐기물 법정 보관기간 준수(**코로나격리의료 7일, 일반의료 15일**)
 - 조직물류 형태는 **전용 냉장시설(4℃ 이하)**에 반드시 보관
 - 의료폐기물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
 -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은 매일 1회 이상 약물소독
 -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은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외부인 출입을 제한**
 -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에는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 설치

나. 수집·운반 및 소각처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되, 임시보관창고 **매일 1회 이상 소독**

※ 처리상황과 최종 처분여부는 환경공단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

② 시설별 코로나19 폐기물 안전처리 방안

1. 생활치료센터

가. 폐기물 분류

- **(의료폐기물)** 확진자에 대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
- **(생활폐기물)** 확진자에 대한 의료행위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은(음식물쓰레기 포함) 생활폐기물로 처리

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 **(의료폐기물)** 확진자에 대한 의료행위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소독·밀봉하여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법정기한 7일 이내 배출)
 -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생활 및 의료지원이 실시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으로 간주
 - **(배출·보관)** 환자 진료실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소독 후 전용용기에 담아 밀봉하고, 지정된 **별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
 - *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별도 공간, 임시 컨테이너 등)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 매일 1회 이상 약물로 소독하여야 함
 - **(운반·처리)** 지정된 수집·운반업체가 보관장소에 보관된 폐기물을 지정된 처리업체로 운반하여 소각처리
- **(생활폐기물)** 운영인력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은 별도의 보관기간 없이 처리 가능, 확진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은 아래와 같이 처리
 - ※ 하단 생활폐기물 배출·처리 방식 등은 운영기관에서 상황에 맞게 책임·관리

☞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관별 역할**

- ▶ **(생활치료센터)** 지자체 조례에 따른 종량제 쓰레기, 재활용품 등으로 분리·보관
- ▶ **(관할 지자체)** 생활폐기물 운반·처리

- **(보관)** 격리자는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로 분리*하여 소독한 후 개별 격리실 등*에 보관

* 생활치료센터는 격리자에게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보관용 봉투 등 **보관 용기 제공**

** 격리기간 중 외부로 폐기물 반출 금지가 원칙이나, 시설 여건에 따라 개별 격리실에 보관이 어려운 경우 주기적으로 수거하여 센터 내 지정된 보관시설에 보관(개별 격리실에서 폐기물 배출 시 재소독)

- **(수거)** 생활치료센터 관리인력은 격리자 폐기물을 수거하여 지정된 보관시설*에 보관

* 관할 지자체에서 수거가 용이한 구조(별도 공간, 임시 컨테이너 등)로 **종량제 봉투,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로 분리하여 보관**하며 매일 1회 이상 약물로 소독

** 생활치료센터는 지자체 환경과 또는 청소과와 사전 협의 배출일정 협의

- **(운반·처리)** 지자체에서는 생활치료센터가 보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게 처리

※ 수거처리 과정에서 수시로 소독하고, 수거한 폐기물은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소각이 아닌 매립 등의 방식일 경우 지자체의 기존 방식으로 안전하게 분리수거·처리

참고

생활치료센터 폐기물 배출 안내문

《 환자 안내문 》

격리기간중에 발생하는 일반쓰레기는 제공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소독제로 쓰레기층 상부와 봉투 외부를 충분히 소독한 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는 소독하여 분리 보관하고, 모든 쓰레기는 1일 1회 이상 소독하여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격리기간 중에는 폐기물의 외부 배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배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수거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임시생활시설

가. 폐기물 분류

- **(의료폐기물)** PCR 검사시* 발생한 폐기물(면봉, 방호복 등)은 일반의료폐기물
* 다만, 배출시 양성·음성 여부가 구분된다면 음성인 경우에 한하여 생활폐기물로 처리
- **(생활폐기물)** 숙소이용자(미확진자) 및 운영인력 폐기물, 격리 중 확진판정 받은 환자가 배출한 생활폐기물

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 **(의료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5호를 준수*하여 소독 후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다른 폐기물과 구분된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위탁처리
- **(생활폐기물)** 지자체에서는 숙소이용자(미확진자) 및 운영인력 폐기물은 조례에 따라 처리, 확진자가 배출한 폐기물은 확진자 이송 후 소독하여 생활폐기물로 처리

3. 병·의원

가. 폐기물 분류

- **(의료폐기물)** 자가진단키트(RAT), PCR, 보호장비 등 코로나19 진단 시 사용된 폐기물은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

* 다만, 코로나19 양성·음성환자가 명확히 구분된다면 음성환자 진료에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생활폐기물(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에 준하여 처리 가능

- 확진자에 대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확진자의 혈액, 체액 등이 묻은 주사기 등)로 처리

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 **(의료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를 준수하여 처리하되,
 - 코로나19 진단 시 사용한 폐기물을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 및 전용용기 외부를 소독하여 보관·배출

※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확진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잔반 등)**은 소독 후 안전하게 생활폐기물에 준하여 배출·처리

☞ 코로나19 진단 시 사용한 일반의료폐기물 소독·배출 방법(모든 시설)

- ① 골판지 전용용기에 투입하기 전 폐기물을 소독하여 의료폐기물 전용봉투(또는 골판지 전용용기 내부봉투)에 폐기물 투입
- ② 폐기물 봉투 내부(쓰레기층 상부) 소독 후 밀봉
- ③ 밀봉한 폐기물 봉투를 외부 소독하여 골판지 전용용기에 투입
- ④ 골판지 전용용기 밀봉 후 외부를 소독하여 보관
- ⑤ 최종배출 전 용기 외부를 재소독하여 위탁처리

4. 재택치료(자가격리자 포함)

가. 폐기물 분류

- **(생활폐기물)** 자가격리(재택치료) 중 발생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되, 자가격리(재택치료)가 종료 된 후 배출

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법 및 배출요령 매뉴얼* 보급(붙임3)
 - * 소독방법, 폐기물 투입 및 보관·처리방법, 확진판정 시 협조요청 사항 등
- 발생한 폐기물을 매뉴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출·처리
 - **(보관)** 자가격리(재택치료 포함) 기간 동안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로 분리하여 소독한 후 보관
 - 일반쓰레기는 이중밀봉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봉투*에 담아 보관* 종량제 봉투, 지자체가 제공한 봉투, 의료폐기물 전용봉투 사용 가능

☞ 미확진 자가격리자 폐기물의 예외적 배출허용

- 자가격리 중 **배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폐기물 배출이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 보건소 담당자는 배출허용 여부를 판단**하여 시·군·구 생활폐기물 담당부서(생활폐기물처리업체)와 협조하여 수거·처리
- * 수거처리 과정에서 수시로 소독하고, 수거한 폐기물은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소각이 아닌 매립 등의 방식일 경우 지자체의 기존 방식으로 안전하게 분리수거·처리

- **(배출)** 자가격리 또는 재택치료가 종료되었거나, 자가격리자가 확진판정을 받아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이송된 경우
 - (일반쓰레기) 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종량제 봉투에 한번 더 넣어 소독하고 이중 밀봉하여 배출
 -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소독 후 품목별 분리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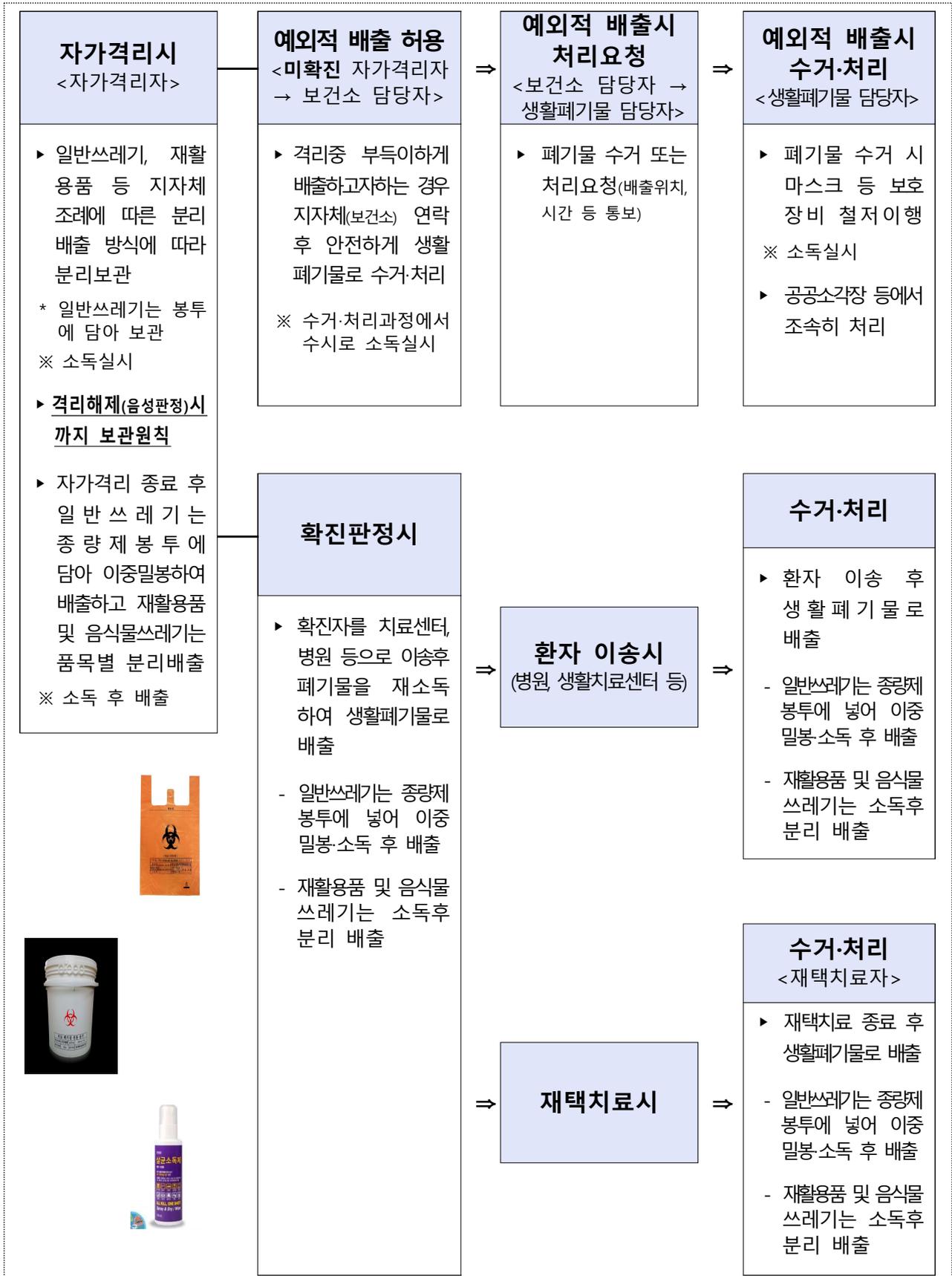
☞ 폐기물 종류별 배출방법

- ▶(일반쓰레기)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상부·외부 소독 후 배출(이중밀봉)
 -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종량제봉투(또는 전용용기)에 넣어 상부·외부 소독하여 배출
 - * 해당 지역 기존의 종량제 배출방식(봉투, RFID, 칩·스티커 등)에 따라 배출
 - ▶(재활용품) 재활용품은 표면 소독 후 배출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지침 참조

※ [참고] 가정 등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코로나 관련 시설 외에서 사용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폐기 방법?

- ⇒ 진단결과가 양성인 경우 비닐로 밀봉 후 PCR검사시 선별진료소, 검사기관 등에 제출하여 의료폐기물로 처리, 음성인 경우 동봉된 비닐에 담아 생활폐기물 처리

<자가격리자 폐기물 보관·처리 체계>



③ 확진자 방문지 및 다중이용시설 폐기물

- 환자에 노출된 지역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적정 소독 처리한 후,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밀폐·소독 후 공공소각장 등에서 소각처리

※ 참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8월)

-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 소독작업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이중밀폐·소독 후 공공소각장 등에서 소각처리

④ 폐기물 종사자 지원 및 사고예방

- (폐기물 종사자) 의료폐기물 지도·단속 요원, 코로나-19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 종사자는 개인보호장비* 철저 사용으로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 개인 소독약품, 마스크, 보호안경, 보호장갑 및 일회용 가운 등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권장하는 보호장비 착용

- (환자이송 119 구급대 등) 코로나-19 의심환자 등의 수송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적정 처리(시·도)
- (운송사고 예방)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소독 강화, 안전운행 수칙 준수 및 사고 예방관리 철저(의료폐기물처리공제조합)
- (특별점검) 기관장 전담제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 종합병원: 유역·지방환경청
 - 종합병원 외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지자체
 - 수집·운반업체, 소각처리업체: 유역·지방환경청 1:1 전담 관리

5 행정지원 대책

1. 행정지원 방향

- [신속처리] 코로나-19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고, 사후에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등 행정처리

코로나-19 폐기물 발생 → 관할 환경청 처리전화신고 → 수집·운반 및 당일처리 (기존 계약업체) → 환경청 및 시·군·구 처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지원

- 폐기물처리업체 변경시, 선 변경 후 행정처리 허용
 - ※ 병원 등 배출기관을 철저히 관리하되, 코로나-19 폐기물의 우선 처리 과정에서 수집·운반 등이 폭증하여 코로나-19 폐기물 외 의료폐기물에 대한 보관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적정성 검토 후 적용
- 지역별 ‘생활치료시설’ 지정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으로 간주하고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은 사후 처리(지역·유역환경청)
 - * 환경공단은 올바로시스템에 생활치료시설을 배출자로 임시 등록하여 폐기물 인수·인계정보 관리

2. 기관별 지원사항

- [환경부] 의료폐기물 총괄 상황관리
 -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등
- [환경청] 관내 의료폐기물 처리 상황관리
 - 배출량 폭증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

도래 시 ①미리 일반의료폐기물 비상소각(지정폐기물 소각업체)
검토·준비, ②환경부로 소각업체 상황 즉시 보고

○ **[시·도]** 특별대책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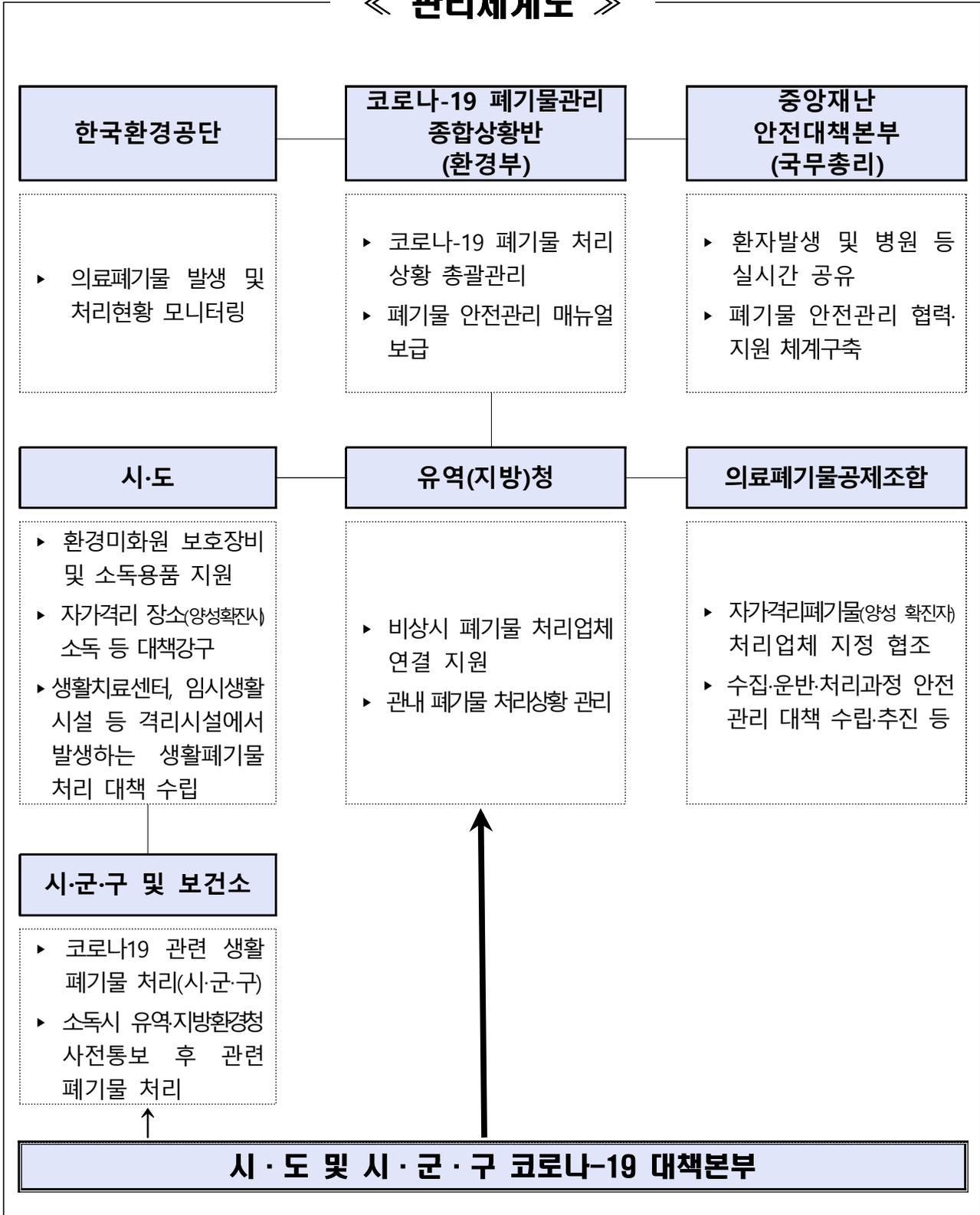
- 시·도 관할 여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종사자 등에 대한 재정 및 행정지원 대책 강구
- 자가격리자가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폐기물을 배출 요청·접수 시, 배출 필요성을 검토하여 시·군·구 생활폐기물 담당자에게 통보
- 코로나-19 의심·확진 환자 이송에 따른 119 구급대 등의 의료폐기물 소독 및 처리 지원대책 강구

○ **[시·군·구]** 관할지역내 생활폐기물 처리

- 관할 지역내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계획 마련 및 폐기물 처리

○ **[한국환경공단]** 울바로시스템을 통한 격리의료폐기물 발생, 처리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

《 관리체계도 》



붙임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및 개인보호장비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p>의료폐기물 전용봉투</p>	<p>합성수지 전용용기</p>	<p>골판지 전용용기</p>

□ 개인보호장비

<p>장갑 보호복</p>	
<p>마스크</p>	
<p>고글/안면보호대</p>	

① 코로나-19 확진전 자가격리자의 생활폐기물의 배출요령

가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는 봉투에 담아서 소독제로 쓰레기층 상부와 봉투 외부를 충분히 소독한 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는 소독하여 분리 보관하고, 모든 쓰레기는 1일 1회 이상 소독하여 주시기 권장드립니다.

격리기간 중에는 폐기물의 외부 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하게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할 때에는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가 종료된 후 봉투에 담긴 일반쓰레기는 봉투를 골고루 소독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는 소독 후 분리하여 배출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②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폐기물 배출요령

병원 이송 전까지 ①과 같은 방법으로 소독하여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은 확진자를 이송 후 다시 한번 소독하여 ①과 동일하게 분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택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보관하되, 재택치료가 종료된 후 다시 한번 소독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분리배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4

환경부 및 환경청 비상연락망

관할기관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이정미(과장)	044-201-7360
			김민석	044-201-7366
			권예진	044-201-7361
		생활폐기물과	배영균	044-201-7425
			노광일	044-201-7430
환경청	한강청	자원순환과	박영복(과장)	031-790-2802
			이찬평	031-790-2806
			황수경	031-790-2861
	낙동강청	자원순환과	윤현식	055-211-1380
			신정화	055-211-1616
			최종열	055-211-1621
	금강청	자원순환과	김영(과장)	042-865-0799
			이종현	042-865-0735
			노성준	042-865-0725
	영산강청	자원순환과	이야문(과장)	062-410-5240
			김병산	062-410-5202
			정지석	062-410-5215
	원주청	환경관리과	고동훈(과장)	033-760-6041
			장무근	033-760-6050
			김도연	033-760-6044
	대구청	환경관리과	정연성(과장)	053-230-0710
			조우영	053-230-0711
			신가현	053-230-0721
	전북청	환경관리과	강정완(과장)	063-238-8831
			최연기	063-238-8842
			강철희	063-238-8841